



부 산 고 등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5누2320 재산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 담당변호사 이○○
피고, 피항소인 ○○광역시 ○○군수
제 1 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25. 5. 15. 선고 2024구합23109 판결
변 론 종 결 2025. 10. 17.
판 결 선 고 2025. 11.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9. 13. 원고에게 한 재산세 부과처분 중 7,596,970원에 대한 부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 내지 강조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보태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내지 강조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제1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제5호 가목은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내의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 시기를 묻지 않고 분리과세의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뒤에 위치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9항은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라도 1989. 12. 31. 이전부터 소유한 것에 한정하여 분리과세의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전이나 법규정의 배열상 앞의 규정이나 지방세법에서 달리 근거를 두지 않았음에도 뒤에 위치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9항이 제102조 제2항 제5호 가목의 적용 범위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9항은 무효이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을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중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제5호 가목에서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중의 하나로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임야를 규정하는 한편,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9항에서 제2항 제5호 각 목의 임야는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하는 것 등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지방



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9항은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명시적으로 위임받은 사항을 그 위임 범위 내에서 구체화하여 규정한 것이어서 그 근거가 분명하다. 같은 시행령에서 뒤에 위치한 조문이 앞의 조문의 적용범위를 한정하는 것은 입법기술이나 입법방식의 제약 등으로 인한 것일 뿐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뒤에 위치한 조문이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제2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개발제한구역법은 2000년에 비로소 제정, 시행되었는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9항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 전인 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대상 임야를 소유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무효라고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9항 제1호에서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임야는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하는 것 등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1989년 12월 31일이라는 기준은 개발제한구역법 제정과 무관하게 토지 소유일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문 5면 4행 내지 6면 7행에서 살펴본 개발제한구역 임야의 취득시기를 한정하여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포함하는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9항에서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개발제한구역 임야의 취득시기를 개발제한구역법 제정 전인 1989년 12월 31일로 규정한 사유만으로 이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1-19

재판장 판사 박○○

 판사 정○○

 판사 배○○